풍력발전기(HJWT1500) 정기점검 용역

과 업 지 시 서

2018. 4.



과 업 지 시 서

1. 과 업 명 : 풍력발전기(HJWT1500) 정기점검 용역

2. 과업의 목적

본 용역은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[모델명: HJWT1500(1,500kW×8기)]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를 실시하여 풍력발전기의 지속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과업의 기간 : 착수일로부터 270일

4. 과업의 범위

가. 공가적 범위

정기점검 대상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[모델명 : HJWT1500]를 포함한다.

- 1)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: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464-78 일대
- 2) 행원풍력발전단지 : 제주시 구좌읍 행원로 13길 122 일대
- 나. 내용적 범위
 - 1)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HJWT1500× 7기 : 정기점검 2회 등
 - 2) 행원풍력발전단지 HJWT1500× 1기 : 정기점검 2회 등

5. 보안 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,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나.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용역수행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한다.
- 다. 모든 성과품은 제주에너지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
- 라.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

6. 계약해지조건

- 가. "공사"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) 풍력발전기 조작 및 점검 미숙 등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 - 2) "공사"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
 - 3)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

7. 설계변경조건

- 가. 과업수행 중 진단대가,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
- 나.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다.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 피할 때
- 라.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.

8. 일반 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, 관계법령,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"공사"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변경하고 사후에 서면보고할 수 있다.
 - 1) 과업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(용역공정예정표)
 - 가) 1년 정기점검은 착수 후 7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.
 - 나) 6개월 정기점검은 12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.
 - 2)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 계획
 - 3) 책임기술자선임계
 - 4) 용역수행자 과업내용
 - 5) 용역수행자 인적사항(재직등명서 등)
 - 6) 보안대책 및 각서
 - 7) 장비 투입 계획(필요 시)
 - 8)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손해배상공제증권
- 다.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(보고서)에는 계약상대자가 "공사"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한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

임무를 부여하고 본 과업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며 과업 수행시 "공사"에게 보고(작업일보 등)를 해야 한다.

- 마.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그의 종업원, 대리인 등은 "공사"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 및 풍력 발전기에 접근해야 한다.
- 바. 계약상대자는 그의 종업원, 대리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
- 사. 본 과업 수행 시 발견된 발전기 고장에 대해서는 "공사"에게 즉각 보고 해야 한다.
- 아.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"공사"의 해석에 따른다.
- 자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"공사"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.
- 차.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,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업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"공사"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해야 한다.
- 카.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, 자료 등은 "공사"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용역 수행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.
- 타.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(용역공정예정표)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계획보다 7일 이상 지연이 예상될 경우 "공사" 감독 관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파.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"공사"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,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해야 한다.

9. 특기 사항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실시하기 전에 "공사"에게 세부일정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나.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"공사"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.

- 다. 과업 수행 완료 후 발전기 내부 및 자재창고는 깨끗이 청소 및 정리를 해야 하며 사용한 공구 및 소모품 등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.
- 라. 정기점검 시 필요한 기본공구 및 특수공구(토크 및 텐션 장비, 축정렬 장비, 저저항계 등)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고, 정기점검 자재는 "공사"가 제공한다.
- 마. 책임기술자는 본 과업기간 동안 과업내용을 전일, 금일, 명일로 구분지어 "공사"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바. "공사"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- 사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풍력발전기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풍력발전기 조작 및 운전(원격감시 시스템 및 풍력발전기 내 컨트롤러 조작 등)을 할 수 있어야 한다.
- 자. 계약상대자는 HJWT1500 풍력발전기 정기점검 시 필요한 특수공구를 확보해야 하며, 이에 대하여 "공사"에게 사실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번호	항목	세부사항	비고
1	Tension Head(나셀)	M36	
2	Tension Head(블레이드-피치베어링)	M30	
3	Tension Head(메인베어링)	M39	
4	Tension Head(피치 베어링-허브)	M30	

- ※ 위에 명시된 공구가 아니더라도 호환 가능할 시 적용 가능
- 차. 작업자가 발전기를 출입 할 경우 안전장비를 착용 후 작업자 사진을 포함한 출입일시, 작업내용, 출입인원 명단 등을 모바일을 통해 감독관 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한다.

10. 과업수행 내용

- 가. 풍력발전기 정기점검 2회
 - 1) 정기점검은 6개월 정기점검과 1년 정기점검으로 총 2회 실시한다.
 - 2) "공사"에서 제공하는 해당 풍력발전기의 Check List 및 매뉴얼을 확실히 숙지하고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한다.
 - 3) Check List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"공사"가 경미한 점검(녹 제거 및 방청작업 등)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수행한다.

국산풍력발전기(HJWT1500) 정기점검 과업항목				
1. 기능 안전 체크				
2. 블레이드				
3. 허브부	• 노즈콘 • 허브 • 피치 드라이브 • 배터리 박스 • 허브 캐비닛			
4. 메인베어링, 메인 샤프트, 메인 프레임	• 메인 베어링 • 메인 샤프트와 쉬링크(Shrink) 디스크 • 메인 프레임			
5. 기어박스 연결부				
6. 슬립링				
7. 브레이크 디스크와 커플링	・ 브레이크・ 고속축			
8. 제너레이터				
9. 유체 커플링				
10. 요 유닛	• 요 드라이버 • 요 베어링			
11. 거더(Girder) 시스템				
12. 너셀	• 너셀 커버 • 너셀 상부			
13. 제어시스템, 센서시스템				
14. 전기장비	・ 너셀 결선・ 너셀 캐비닛・ 베이스 캐비닛・ 서비스 크레인・ 접지 및 피뢰침			
15.타워	 일반 육안 검사 타워 볼트 타워 내부 설치 케이블 사다리, 안전 장치 및 승강기 			
8. 외부 변압기(22.9kv-690v)	• 절연저항 및 선간저항 측정 ※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진행			

※ 상기 항목 이외에 "공사"에서 제공하는 해당 풍력발전기 Check List 참조

- 4) 기어박스 오일 샘플링 분석
 - 가) 기어박스 오일을 샘플링하고 윤활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 보고서를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.
 - 나) 분석항목 : 청정도, 금속입자 및 외부 오염물질, 점도 분석 등
- 5) 블레이드 진단
 - 가) 블레이드의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점검 등 블레이드 진단보고서를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.
 - 나) 블레이드 상태평가 점검 항목
 - (1) 블레이드 공력에 영향을 주는 형상 변형 또는 소음발생 여부
 - (2) 블레이드 Receptor 상태 확인
 - (3) 블레이드 Leading edge 및 Tailing edge 상태 확인
 - (4) 블레이드 Root, Tip 상태 확인
 - (5) 블레이드 Shell 상태 확인
- 6) 사진대지 작성
 - 가) "공사"와 사전 협의 후 정기점검 주요 항목에 대한 작업 전 후 사진대지를 작성 하여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.

나. 작업일보 작성

본 과업기간 동안 과업내용을 전일, 금일, 명일로 구분지어 과업내용 (작업일보)을 "공사"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라. 일일점검보고서 작성

- 1) "공사"에서 제공하는 '일일점검보고서' 양식에 따라 작업내용을 작성하며 사용자재, 작업내용, 사진 등 상세히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2) 당일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상 당일 제출이 불가피 할 시에는 "공사"에게 동의를 얻어 익일 오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마. 종합 보고서 작성

- 1) 종합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.
 - 가) 본 과업의 목적 및 내용
 - 나) 본 과업에 사용된 부품, 소모품의 수량
 - 다) 정기점검 Check List
 - 라) 정기점검 사진대지 (호기별)
 - 마) 기어박스 오일 샘플링 분석보고서
 - 바) 블레이드 진단보고서
- 2)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
- 3) 기타 "공사"가 요구하는 문서
- 바. 요약 보고서 작성

- 1) 요약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.
 - 가) 본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
 - 나) 정기점검 Check List 요약본
 - 다) 샘플링 분석 요약본
 - 라) 블레이드 진단 요약본
 - 마) 기타 "공사"가 요구하는 내용

11. 하도급 거래

- 가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일부를 타업체로 하여금 수행할 목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"공사"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관련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
- 나. 하도급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, 하도급 업체는 [5. 보안 사항]을 준수해야 한다.

12. 안전관리

- 가.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등 제반설비 및 절차를 갖추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자에 대한 안전사고의 모든 관리 및 사후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13. 손해배상책임 등

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"공사"의 설비에 고장을 초래한 경우 발전차질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금과 고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보상한다.

14. 성과품 제출

- 가. 요약 보고서 5부
- 나. 종합 보고서 5부
- 다. 작업일보 3부
 - ※ 위 과업에 따른 성과품은 CAD, MS office2007, 한글2007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여 CD 2매 제작·제출해야 한다.